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11조제1항),

인가받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공사시작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완공 예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제17조).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인가 취소를 규정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인가취소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